

## 2025년 사회부문 경상조사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사회부문 경상조사분야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. 11. 11.

동북지방통계청장

### 1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

지역	모집구분	모집인원	계약방법	계약기간	수당	비고
대구	대체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원)	1명	근로계약	2025. 11. 27. ~ 12. 31.	73,170원 (1일 기준)	

※ 계약기간 및 채용일정 등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
### 2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사회통계부문 (경상 및 연간조사 전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사회통계부문 경상조사 현장조사업무 수행</li><li>· 방문실사 조사표</li><li>· 작성한 조사표 내용검토 및 보완</li><li>· 불응 조사대상처 설득</li><li>· 기타 조사관련 현안 업무 처리 및 사무지원 등</li></ul>

### 3 근로조건 및 보수

- 근무시간 및 형태: 주 5일제(40시간), 1일 8시간(9시~18시) 근무
- 보수: 일급 73,170원 및 기타 법정수당(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)

1차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 2차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 최종합격자 선정기준

- 2차 전형 점수가 높은 자
- 2차 전형 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
- 1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점 부여

<b>5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</li> <li>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</li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/ul>
<b>10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</li> <li>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</li> <li>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</li> </ul>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

<b>5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특수임무부상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중 배우자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</li> </ul>
<b>10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</li> <li>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</li> </ul>

## 5

### 응시 자격요건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 - 저소득층의 범위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제2호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  - 다자녀보육가구: 20세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
  - 북한이탈주민: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「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( 「국가공무원법 제33조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(통계청)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(통계청)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-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

## 6

### 전형일정

- 채용공고: 2025. 11. 11.(화) ~ 2025. 11. 20.(목)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5. 11. 24.(월) 17:00 이전
- 면접일시: 2025. 11. 25.(화) 10:00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11. 25.(화) 17:00
  -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(<https://kostat.go.kr/ardb>) 공지사항에 공고

## 7

##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 11. 11.(화) ~ 11. 20.(목)
- 접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전화번호	이메일
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	김유빈	대구 북구 동암로64 (샘빛관 2층)	전화) 053-609-6695 팩스) 053-326-9587	ubin24@korea.kr

- 접수방법: 이메일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  - 접수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
## 8

## 제출서류

- 응시원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, 자기소개서 각 1부(필수제출, 붙임서식 참조)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.(필수제출, 이증취업 확인용)

## &lt;해당자 추가 제출서류&gt;

- 자격증명서 1부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 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
- 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(25. 11. 20.(목) 18시)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-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




【붙임3】

## 자 기 소 개 서

업무명	사회부문 경상조사	분 야	대체기간제근로자
성 명		연락처	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의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**1. 지원동기 및 포부, 통계청 조사관련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 내역 등을 자유롭게 작성**

**2. 과거 업무경력, 일반경력(지자체 통계조사 경력), 통계관련 다양한 경험 등을 자유롭게 작성**

## 【붙임4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(해당자만 제출)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#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귀하

#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 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